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 확대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6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입법취지	2
2. 소비자 이익침해의 보호 대상 명확화	4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를 확대	6
4. 위임규정의 정비	9
※ 참고자료	15
1. 개정안 관련 현행 고시규정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6.
3. 회부연월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

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취지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소비자 이익침해”의 범위를 “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이익침해”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1조의2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2019.8.20. 신설, 2020.2.21. 시행)된 조문임. 그러나, 현행법 제11조의2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의견¹⁾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률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별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할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2024. 2. 21일자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사업을</u>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u>가격인상</u> ,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u>소비자</u>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 -----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인상-----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비자 이익침해의 보호 대상 명확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의 구조를 보면 ‘본문’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고 함)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²⁾과 단체행위 금지 규정(제51조제1항제1호)³⁾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본문에 따른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조합등의 공동행위에 따른 이익침해의 보호 대상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소비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간소비자인 거래상대방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 조합등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합등의 공동행위에 따른 이익침해의 보호 대상인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⁴⁾⁵⁾ 중 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 촉진 및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강화를 위해 신설(2019.8.20. 일부개정, 2020.2.21. 시행)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의 입법취지가 보다 선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의 공동행위에 따른 이익침해의 보호 대상인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 중 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소비자로 한정하더라도, 개정법률에 따라 허용된 조합등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중간소비사업자가 비용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소비자가 인상 등)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를 확대

개정안은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⁶⁾에서 조합등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산한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즉,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거래분야의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경우, 합산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조합등의 경우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조합등의 공동행위 허용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적용) 다만, 가격인상 등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소비자이익 침해시 예외	조합등의 공동행위 허용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적용) 다만, 가격인상 등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소비자이익 침해시 예외 합산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공동행위 허용 (개정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등의 경우 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특수한 거래분야의 경우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과 같은 공동행위 관련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합등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거래상대방(중소기업도 포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등의 경우 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특수한 거래분야의 경우 현행과 달리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비자

희생을 담보로 조합등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이 비록 과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배력을 확보하면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점유율의 경우 사전적 판단이 곤란하고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수범자의 행위 판단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제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조합을 나누어 설립하는 등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개정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조합등 사업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시장질서 훼손,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관계부처(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조합등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산한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위임규정 정비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생 략)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생 략) ② <u>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의 구조를 보면 ‘본문’에서는 조합등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⁷⁾과 단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함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체 행위 금지 규정(제51조제1항제1호)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본문에 따른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⁹⁾을 2020년 2월 고시한 바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은 가격결정·생산량 조절·거래 제한·설비투자 제한 등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9) [참고자료 1] 참조.

여지를 두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체만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현행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위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법령에서 규정될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¹¹⁾¹²⁾.

참고로 법률에 위임규정을 두는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은 가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이 바람직하며¹³⁾,

10) 국회사무처, “제410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2호”, 2023, pp.38~39.

11) 참고로 2020년 2월 최초로 고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은 이후 5년이 경과한 2025년 2월 현재까지도 내용을 개정하여 다시 고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 대로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어렵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12)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의 규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또 다른 행정규칙의 일종인 “공정거래위원회예규”로 규정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3)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p.16.

법률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어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이 바람직함¹⁴⁾.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 등 국민의 권리 침해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의 경우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경우

14)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p.2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¹⁵⁾은 대통령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대통령령안 입안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¹⁶⁾의 방법, 국무회의 심의¹⁷⁾¹⁸⁾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견을 관련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1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대통령령안의 경우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참고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이 아니지만¹⁹⁾²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정부조직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관련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²¹⁾²²⁾²³⁾²⁴⁾.

문 의 처
02) 6788-5463

- 19)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 18. (중 략)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단서 생략)
- 20)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23)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24)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개정안 관련 현행 고시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② "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및 구성사업자의 행위가 제2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 또는 구성사업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제2장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행위

제4조(부당한 가격 결정) ①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판매·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
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5조(생산량 등의 조절)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판매량·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생산량·판매량·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
2. 생산량·판매량·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
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판매량·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제6조(거래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제7조(설비투자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8조(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강제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제3장 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9호, 2020. 2. 21., 시행]